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1043호 2014. 9. 1.(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13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13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3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1004호 인천광역시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 ·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 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1011호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1016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신청 공고 --- 10
- 인천광역시서구 재정공시 제1호 2014년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 ----- 14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 - 13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8.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청라루비로42번길 6-28외 1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08. 29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4-08-29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경서동 968-14	청라루비로42번길 6-28	2011-02-14	청라루비로의 시작점에서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 서구 연희동 799-20	중봉대로586번길 9-23	2011-02-14	중봉대로 시작점부터 약 5,860m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로 주민의견 반영	
3	인천 서구 경서동 976-139, 976-140	옥빛로7번안길 17	2013-07-30	옥빛로7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 서구 연희동 742-5	연희로33번길 6	2010-11-05	연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 서구 경서동 1002-1	이화로26번길 26	2012-10-19	이화로 시작지점부터 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 서구 경서동 853-8	청라루비로144번길 6-14	2011-02-14	청라루비로의 시작점에서 1,4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 서구 검암동 634-3	승학로506번길 51	2009-08-28	승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5,0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 서구 경서동 732-4	도요지로 36	2009-08-28	도로인근에 녹청자 도요지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2013-07-30	
9	인천 서구 경서동 976-81	푸른로13번길 12	2013-07-30	푸른로 시작지점부터 약 1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 서구 연희동 767-11	청라에메랄드로163번길 16	2010-11-05	청라에메랄드로의 시작점에서 1,6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당하동 1111-7	청마로134번길 18-8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오류동 1651-7	검단로92번길 14	2012-10-25	검단로 시작지점부터 9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금곡동 677-4	신동길 39	2009-09-22	신동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14	대곡동 452-1	설원로138번안길 38-3	2013-07-30	설원로138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오류동 1654	검단로 107	2008-12-31	현 금곡동 쇯골마을 뒷산 사자봉 남쪽 기슭에 검대이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지명 부여	
16	원당동 841-6	고산로45번길 4	2008-12-31	고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불로동 불로지구 22블럭 5로트	검단로744번2길 20	2008-12-31	검단로744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두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18	오류동 417-1, 417-7, 432-6, 432-9	원당대로205번길 2-65	2008-11-2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2,0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 13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4. 08.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승학로506번길 53외 2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고시일 : 2014-08-29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검암동 634-3	승학로506번길 53	2014-08-20	건축물 멸실	
2	인천 서구 가좌동 173-392	보도진로53번길 7	2014-08-19	건축물 멸실	
3	인천 서구 오류동 424-2	검단로188번길 5-2	2014-08-29	건축물 멸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1004호

인천광역시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폐지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법률에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이행강제금 규정이 마련되어 폐지하고자 함.

2. 조례내용

○ 인천광역시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9. 19(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토지정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 주실 곳

- (우)404-701/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번지 서구청 토지정보과
- 전화 : 032-560-4812, 팩스 : 032-560-2786
-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www.seo.incheon.kr/고시·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1011호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과 관련하여 우리 구 세입세출외현금 중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우리 구 세입으로 귀속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처분내용 : 세입세출외현금의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으로 귀속
3. 공고기간 : 2014. 8. 27 ~ 2014. 9. 13(18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5.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제77조 제4항
6.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채권자일 경우 청구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 경리팀(032-560-4157)

2014년 8월 2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내역

연번	납부자	적요	수납일자	귀속대상금액
1	최유순	소득세, 주민세	2008-06-20	31,970
2	이용찬외2인	연금, 건강	2008-07-02	33,507
3	총무과(직원봉급공제금)	소득세, 주민세	2008-12-05	56,060
4	토지정보과/일반회계/일상경비출납원	연금, 고용, 건강	2008-12-26	33,480
5	복지서비스과	연금, 건강, 고용	2008-12-29	43,200
6	이수진 외 2	연금, 건강	2008-12-30	140,400
7	총무과(직원봉급공제금)	연금, 건강, 장기요양, 고용	2008-12-30	33,480
8	총무과(직원봉급공제금)	연금, 건강, 장기요양, 고용	2008-12-30	33,480
9	총무과(직원봉급공제금)	연금, 건강, 장기요양, 고용	2008-12-30	33,480
10	토지정보과/일반회계/일상경비출납원	연금, 고용, 건강	2008-12-30	7,493
11	서구청(건설과)	국민연금	2008-12-30	25,400
12	총무과(직원봉급공제금)	연금, 건강, 고용	2008-12-30	365,343
13	건축과/일반회계/일상경비	연금, 건강, 고용	2008-12-31	33,480
14	건축과/일반회계/일상경비	연금, 건강, 고용	2008-12-31	33,480
15	총무과(직원봉급공제금)	연금, 건강, 장기요양, 고용, 소득세, 주민세	2008-12-31	95,040
16	GS슈퍼마켓	연금, 건강, 고용	2008-12-31	70,240
17	서구청 재무과	연금, 건강, 고용	2008-12-31	33,480
18	서구청세무과	연금, 고용, 건강	2008-12-31	33,480
19	총무과(직원봉급공제금)	연금, 건강, 고용	2008-12-31	40,950
20	총무과(직원봉급공제금)	연금, 장기요양, 건강, 고용, 소득세, 주민세	2008-12-31	33,480
21	서구청세무과	연금, 건강, 고용, 장기요양	2008-12-31	33,480
22	서구청세무과	연금, 고용, 건강	2008-12-31	234,360
23	김미숙	고용	2008-10-31	1,670
24	행정팀	소득세, 주민세, 채권압류	2009-01-02	33,417,980
25	행정팀	소득, 주민, 채권압류, 건강, 고용, 장기, 연금, 환급소득, 환급주민세	2009-02-20	179,140
26	홍영희, 김은영, 임정숙	5월 봉급공제금(소득, 주민세, 건강, 노인장기요양,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정산료)	2009-05-20	20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1016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신청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약정기간이 2014.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차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금고의 수 : 1개 금고(단수금고)
 - ※ 일반회계, 특별회계(세입세출외현금 포함), 기금을 모두 관리하는 금고
2. 약정기간 : 2015. 1. 1 ~ 2018. 12. 31 (4년)
3. 지정방법 : 일반공개경쟁
4. 금고의 주요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 등 각종 잡종금의 수납 및 지급
 - 일상경비 등 배정자금 및 유가증권, 수입증지의 출납 및 보관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5. 신청자격 :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서구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6. 지정 신청 절차
 - (1) 서류열람
 - 열람기간 : 2014. 9. 15(월) ~ 9. 19(금) 근무시간 중(09:00~18:00)
 - 장 소 : 서구청 세무1과 (본관 1층)
 - 비치서류 : 2012, 2013년도 결산서 및 2013, 2014년도 예산서
 - ※ 금고 지정 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으며, 금고 지정신청 안내서로 갈음

(2) 신청서(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9. 29(월) ~ 9. 30(화) 근무시간 중(09:00~18:00)
- 접수장소 : 서구청 세무1과 (본관 1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제출서류 및 부수
 - 금고 지정 신청서, 법인 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정관(사본), 각서, 사용인감확인서 각 1부.
 - 금고 지정 제안서 및 증빙서류 각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가항목	배점	비고
합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3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3. 주민이용의 편의성	1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9	

※ 세부항목 [별표] 참고

8. 심의·평가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세부 배점 기준을 확정하여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 심의·평가함.
- 서류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면접심의를 병행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 금융기관에서는 면접에 응하여야 함.
- 심의·평가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 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 금융기관 제출자료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적법한 범위내에서 공개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심의·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름.

9.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등

-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최고점수를 득한 금융기관을 우선지정 대상은행으로 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은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함.
- 우선지정 대상은행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 금융기관과 약정체결을 진행함.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동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우리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동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 지정 심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 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 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음.
- 금고로 지정되어 금고업무 상호 인계·인수 시 기존 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에 대하여는 만기 도래한 후 인계·인수함
- 금고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15. 1. 1일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2015. 1. 1일부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10. 비용부담

- 금고 지정 신청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선정된 후 약정 체결, 금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 등은 금융기관 부담으로 함.

11. 기타사항

- 제안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며, 제안서 접수시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 및 세무1과 관계공무원이 제안서 및 증빙서류 각 10부를 확인 후 밀봉할 예정으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인감확인서 지참
- 제안서 접수마감 후 추가 또는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문의 : 세무1과 세무행정팀 (☎ 032-560-4191)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3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자기자본비율 (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7점)로 평가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대손충당금 적립율(건전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협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0 23 (7) (6) (7) (3)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6 4 5 3	
3. 주민이용의 편의성		18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7 7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구와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5 4	

2014년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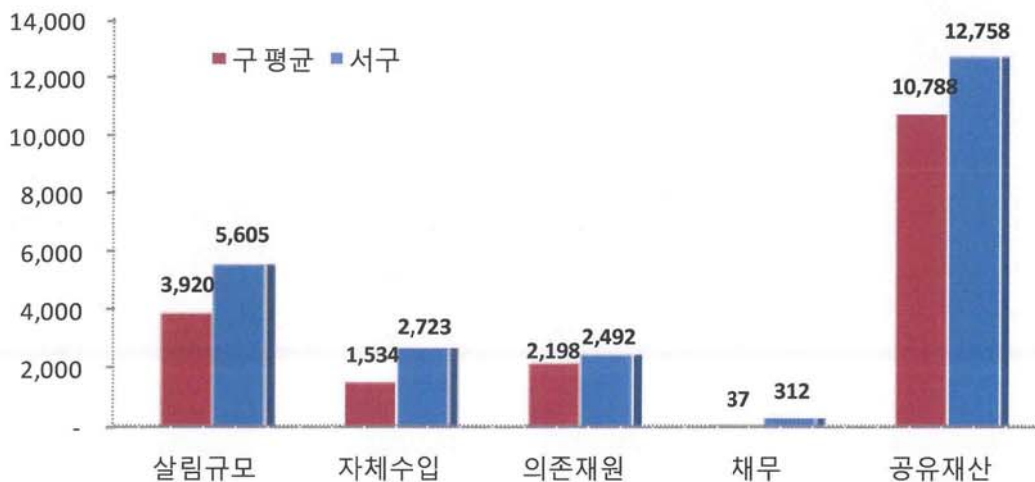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공시 제 1호(2014. 8.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인)



- ◆ 우리 서구의 2013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5,605억원으로, 전년대비 1,014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723억원이며, 구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27만원입니다.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2,492억원입니다.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0억원입니다.
- ◆ 2013년말 기준으로 우리 서구의 채무는 312억원이며, 구민 1인당 지방채무는 64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13년도에 서구 공촌동 305번지 외 469건(3,130억원)을 취득하고, 203건(304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2,758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 우리 서구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동종자치체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종자치단체 살림살이 규모비교(단위: 억원)



- ◆ 우리 서구의 2013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3,920억원) 보다 1,685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1,534억원)보다 1,197억원이 많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2,198억원)보다 294억원 많습니다.
 -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37억원)보다 275억원 많고, 서구의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11천원)보다 52천원 많습니다.
 -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10,788억원)과 비교하여 1,970억원이 많습니다.
- ◆ 우리 서구의 '13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42.89%이며(동종자치단체 평균 33.1%),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0.49%(동종자치단체 평균 51.1%)입니다.
- ◆ 우리 서구의 2013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41억원의 흑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서구의 재정은 동종단체에 비해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재정자주도는 동종평균보다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이는 지방세 수입의 증가와 공유재산 매각 및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높아졌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소와 우리구의 지역적 특성에서 보듯이 넓은 관할 면적(114km²)과 인구의 증가, 청라국제도시 등 각종 국·시책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의 확대에 예산규모가 증가하여 재정자주도는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구는 넓은 면적과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며, 대규모 국·시책 사업이 추진 중인 신흥개발도시로서 자체세입의 증가는 물론 도로, 공원, 녹지 등 필수 기반시설 자체 세출수요 또한 높으며, 동 청사 건립, 문화·복지시설 건립 등 신규 시설수요와 사회복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미래재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seo/icsg4/sub04/001/sub01_02/)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서구청 홈페이지 민원상담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당자 : 기획예산실 김연수

전화번호 : 032)560-4054

이메일 : knyounsoo@korea.kr